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조례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회관 운영 방식을 정립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회관운영의 기본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 회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공연·전시·행사 등의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 위탁 운영 등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10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2
  - 전자메일 : aragu@korea.kr

#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2. 부속시설 및 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그 밖에 공연·교육·행사·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 제2장 대관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및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전시·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사용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목적에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수령할 때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 승인일부터 5일안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이외의 사용료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전액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육·교육기관의 공연: 50%

④ 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중지된 때

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

2.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 ~ 4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 ~ 사용예정일 당일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관람

제11조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전시·행사 등을 관람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경기도, 오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입장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 입장권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의 안전유지 및 공연·행사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

1. 문화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

2. 단체관람자(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

3. 애향장학회 카드소지자

4.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5. 별표 5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의 입장료 할인은 관람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문화예술프로그램

제16조(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및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및 강사의 위촉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참여비 및 수강료 등) ①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필요 시 유료로 운영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별표 4에 따라 참여비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참여비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참여비 또는 수강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참여, 수강신청 및 환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위탁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오산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원활한 공연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 여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1회 사용시간(제6조 관련)

구분	시간	비고
1일	08:00 ~ 22:00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별표 2]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6조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VAT별도)

시설명	구분	사 용 시 간	사용료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행사
공 연 장	대공연장	1일	350,000	385,000	420,000
		오전	150,000	165,000	180,000
		오후	200,000	220,000	240,000
		야간	250,000	275,000	300,000
	소공연장	1일	150,000	165,000	180,000
		오전	50,000	55,000	60,000
		오후	70,000	77,000	84,000
		야간	100,000	110,000	120,000

- 토요일 오후와 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2.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단위: 원(VAT별도)

시 설 명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연주용	대공연장	스타인웨이	1일	100,000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랜드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30,000	
	연습용		1일	30,000		
무대조명	기 본	대 공연 장		1시간	40,000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안개효과기 재료비(포그액, 헤이저액)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명기기 및 콘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 공연 장		1시간	30,000	
	핀스포트라이트		1kW,2kW / 1일	30,000		
	무 빙 라 이 트		1대/1일	30,000		
	PAR64		1대/1일	1,000		
	PAR46		1조/1일	5,000		
	ERS		1대/1일	5,000		
	스트로브		1대/1일	5,000		
	컬러스크롤러		1대/1일	20,000		
	안개효과기(포그/헤이저)		1대/1일	10,000		
	그랜드 MA 콘솔		1일	100,000		
	무대시설	이동무대		1일	50,000	
승 하 강 무 대		1일	50,000			
오케스트라피트		1일	50,000			
무대샤막 흑/백		1작품	50,000			
댄스플로어		대공연장	1작품	100,000		
		소공연장	1작품	50,000		
덧 마 루		기본 20평	50,000			
		추가 5평	10,000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작품	50,000		
	소공연장	1작품	30,000			

시 설 명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무 대 음 향	기본음향(유선 5개 무료)		1일	150,000	○음향콘솔과 회로 추가시 필요한 인력 및 동시.무선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가 부담한다.
	유선마이크	다이내믹	추가1개	5,000	
		콘덴서	추가1개	10,000	
	무 선 마 이 크		1개/1회	20,000	
	모니터스피커		1개/1일	30,000	
	음향콘솔		1일	100,000	
	녹 음(C·D)		1개	20,000	
	녹 화 (DVD)		1개	30,000	
	빔프로젝트(10,000Ansi 미만)		1일	50,000	
	빔프로젝트(10,000Ansi 이상)		1일	120,000	
	빔프로젝트(이동용)		1일	20,000	
냉 · 난 방	냉 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연료 (전기포함) 시가의 10퍼센트 가산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 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 연장을 말한다.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 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난 방		1시간		
연 습 실	대연습실, 중연습실		오전	20,000	○공연 당일의 연습실 사용 은 무료로 한다.
			오후	25,000	
			야간	30,000	
	음악연습실		1회	15,000	

### 3. 기타

단위: 원(VAT별도)

시 설 명		구 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영 화 촬 영 (비디오포함)			1시간	50,000	
중 계 방 송	텔레비전		1회	200,000	
	라디오		1회	10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기 타 물 품			1회		

○ 1회란 별표1에 따른 1일,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별표 3]

문화회원 가입비(제15조 관련)

구분	할인기준	가입비	
1년	1인 2 ~ 4매	10,000원	

[별표 4]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비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수강시간	참여비 및 수강료	비고
문화예술 전문프로그램	5시간 미만	30,000 ~ 50,000	
	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40,000 ~ 80,000	
	15시간 이상	70,000 ~ 200,000	
문화예술 일반프로그램	3시간 미만	15,000 ~ 20,000	
	3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0,000 ~ 30,000	
	10시간 이상	30,000 ~ 50,000	

- 재료비 등은 수강생 본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강좌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4조 및 제17조 관련)

(단위: 원)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④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⑧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⑪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1인 포함) ⑫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⑬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⑭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20% ~ 50%	

-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감면 받을 수 없다.
- 프로그램에 따라 오산문화예술회관 문화회원 및 생업예술인은 20~30% 감면 받을 수 있다.

[별표 6]

참여비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7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납부금액 전액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정지된 경우		
참여자가 스스로 취소의사를 밝히는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납부금액 전액
	프로그램 시작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